

‘97 主要業務報告

(제47회 임시회)

199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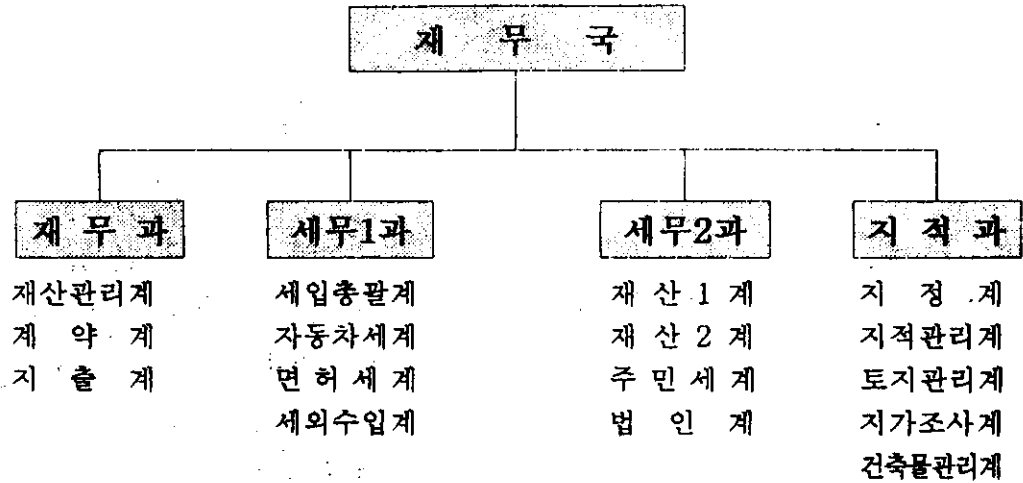
재 무 국

報 告 順 序

- 일 반 현 황 ----- 1
- 재 무 과 주요업무보고 --- 2
- 세무1, 2과 주요업무보고 --- 5
- 지 적 과 주요업무보고 --- 14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16계



□ 인 원 : 정원 114명, 현원 109명, 과부족 5명

구 분		계	행정직	세무직	지적직	기능직	비 고
계	정원	114	32	59	17	6	
	현원	109	30	58	17	4	3(휴직)
재 무 과	정원	19	17			2	
	현원	18	17			1	1(휴직)
세 무 1과	정원	31	4	26		1	
	현원	30	3	27			1(휴직)
세 무 2과	정원	35	1	33		1	
	현원	33	1	31		1	1(휴직)
지 적 과	정원	29	10		17	2	
	현원	28	9		17	2	

재 무 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 국·공유지 점유실태 일제조사

- 기 간 : '97. 4. 1 ~ 6. 30
- 대 상 : 3,362 필지
 - ┌ 국유지 : 1850필지
 - └ 구유지 : 1,512필지
- 결 과
 - 비점유 : 2,795필지 648,284.9m'
 - 사인점유추정 : 567필지 72,955.8m'
 - ┌ 국유지 : 466필지 55,431.4m'
 - └ 구유지 : 101필지 17,524.4m'
- ※ 점유자 현황측량 의뢰 : '97. 6. 20

□ 조사 및 측량불능분 국·공유지 재조사

- 기 간 : '97. 1. 1 ~ 4. 30
- 현 황

구분	조사 대상			점유추정 측량의뢰			점유확인			비고
	계	조사 불능	측량 불능	계	조사 불능	측량 불능	계	조사 불능	측량 불능	
필지	121	43	78	60	10	50	14	4	10	

- 점유필지 변상금 부과
 - 대 상 : 14필지 134.9m'
 - 금 액 : 18,067천원(국유지 10,720천원, 구유지 7,347천원)

□ 행정재산 전수 조사

- 대 상 : 행정목적 사용토지 또는 건물
- 가 간 : '97. 6. 1 ~ 8. 31
- 조사결과

구분	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필지	면적(m ²)
토지	5,777	7,814,064.1	1,651	4,576,844.9	2,441	2,229,701.5	1,685	1,007,517.7

구분	계		국유		시유		구유	
	동수	면적(m ²)	동수	면적(m ²)	동수	면적(m ²)	동수	면적(m ²)
건물	136	66,739.1			9	962.0	127	65,777.1

○ 향후 조치사항

- 불용재산의 관리전환 (행정재산 → 잡종재산)

▶ 대 상 : 마포구 당인동 1 - 11 의 26필지 4,453m²

○ 사업효과

- 행정재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유지 및 효율적 관리

- 행정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의 잡종재산화

▶ 향후 대부계약, 변상금부과, 매각 등으로 구수입 증대

□ 불요토지 매각 실적

('97. 8. 31현재)

구분	건수	면적(m ²)	금액(천원)	비고
계	288	9,447.1	8,554,457	
국유지	269	7,607.2	6,413,513	
구유지	19	1,869.9	2,140,944	

'97 주요업무 계획

□ 사인점유토지 변상금 부과

- 대 상 : 567필지(국유지 466필지, 구유지 101필지)
- 추진일정
 - 점유현황측량실시 : '97. 8. 1 ~ 11. 30
 - 납부 의무자 조사 : '97. 9. 1 ~ 12. 31
 - 변 상 금 부 과 : '97. 10. 1 ~ 12. 31

□ 국·공유지 공유지분 일체 정리

○ 대 상

구 분	계		국 유 지		시 유 지		구 유 지		기 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유지분	421	115,991	325	89,255.8	73	8,565.3	3	4,002.7	20	14,167.2

※ 기 타 : 법무부, 대법원, 교육부, 철도청 등

- 조사기간 : '97. 9. 1 ~ 12. 31
- 조사결과 조치사항
 - 측량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불요토지 매각

□ 불요토지 매각 적극 추진

- 대 상 : 사인점유 또는 200㎡이하의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
- 방 법
 - ┌ 점유토지 : 수의계약
 - └ 비점유토지 :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

세무1, 2과

'97세입 징수실적

□ '97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97. 7. 31현재 누계)

	'97목표	부과	징수	진도율	징수율	(단위: 백만원) '96동기대비 증가액
합계	156,194	90,847	83,342	53.4%	91.7%	10,003
구세	25,642	11,193	10,653	41.5%	95.2%	49
시세	130,552	79,654	72,689	55.7%	91.3%	9,954

◎ '96동기 비교 주요 증감세목 및 원인

【구 세】

- 재산세(167백만원) → 아파트 등 신축건물 증가
- 사업소세(286백만원) → 사업체에 대한 세원발굴 추정으로 증가
- 과년도 체납구세(81백만원) → 체납징수 활동 강화에 따라 증가
- 면허세(△425백만원)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휴대용전화기 비과세

【시 세】

- 부동산취득세(1,644백만원) → 아파트 등 신축건물 증가
- 자동차세(804백만원) → 신규 등록차량 증가
- 부동산등록세(3,023백만원) → 아파트 등 신축건물 증가
- 주민세(3,507백만원) →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 세율 인상 ('97년부터 적용 7.5% → 10%)
- 과년도 체납시세(731백만원) → 체납징수활동 강화에 따라 증가

□ '97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97. 7. 31현재 누계)

(단위: 백만원)

	'97목표	부과	징수	진도율	징수율	'96동기대비 증가액
합 계	47,124	46,551	45,787	97.2%	98.4%	19,441
경상수입	13,145	7,774	7,520	57.2%	96.7%	1,600
임시수입	33,979	38,766	38,267	112.6%	98.7%	17,811

◎ '96동기 비교 주요 증감과목 및 원인

- . 징수교부금(832백만원) → 시세징수액 증가분(시세징수액의 3%)
- . 이자수입(629백만원) → 자금운영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수입증대
- . 재산매각수입(964백만원) → 재개발지구내 편입재산 매각수입 증가
- . 전년도 이월금(16,680백만원) → 구민회관 건립 적립금(91억원) 및 전년도 잉여금 증가분
- . 도로하천사용료(△208백만원)→ 서강대로 개설 등에 따른 도로,하천 점용면적감소
- . 기 타 잡 수 입(△277백만원) →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변상금수입 감소

□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현황

(97. 7. 31현재 누계)

(단위:백만원)

구 분	'97 징수 목 표 액	징 수 액		'96년 7월말 대비 징수액 증감(△)		체납 잔액
		진도율	증가액	증가율		
합 계	4,220	2,693	63.8%	812	43.2%	25,293
구세체납액	521	422	81.0%	81	23.8%	2,155
시세체납액	3,699	2,271	61.4%	731	47.5%	23,138

◎ 주요 체납세목 → 지방세 총체납액의 75.8% 점유 세목

주요 체납세목		체납액	점유비(%)	비 고
구 세	면 허 세	1,015백만원	구세체납액의 47.1%	
	소 계	18,155 "	시세체납액의 78.5%	
시 세	주 민 세	11,012 "	" " 47.6%	
	자 동 차 세	7,143 "	" " 31.0%	

◎ 체납액 과다원인

○ 면허세

- 면허종류(473종)가 다양하고, 면허관리부서가 광범위하여 사업장 주소지 변동상황 등 과세자료를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가 어려운 세목으로 지속적인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하여 정리중임

○ 주민세

- 체납액의 대부분인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 발생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에 국세인 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구청에서 별도 과세하 때문에 과세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주소변동 자료가 많아 고지서 전달이 어려우며,

소득세 외에 별도 부담에 따른 납부 기피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도 등 여파로 체납액의 조기 징수가 곤란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추적하고 있으나 지방세제도상 대부분 후순위로 공매실익이 없는 실정임

○ 자동차세

- 타 세목에 비하여 소유권, 주소변동이 가장 많은 세목이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주소추적이 어렵고, 도난, 무단폐차, 과세기준일을 전후한 양도, 양수인 상호간의 납부거부 등 분쟁으로 징수율이 낮으며, 등록압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체납액이 많은 실정이나 고발 등을 통하여 정리중임

체납징수 주요실적 및 계획

□ 상습체납자 고발 실적(8. 25현재)

- ◇ 고발일자 : 96. 12월
- ◇ 고발인원 : 254 명, 관련 체납액 841백만원
- ◇ 납부자에 대한 고발취하 실적 : 114명, 체납징수액 39백만원
- ◇ 미납자 : 140명 체납액 802백만원
(※ 미납자는 기소중지 처분중에 있음)

□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 봉인압류 실적

- ◇ 추진내용 : 자동차세 체납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등록압류 이외에 주차 현장에서 봉인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
- ◇ 추진기간 : 97.1월 ~ 97. 2월말
- ◇ 추진실적 : 196대 봉인압류, 체납액 징수실적 490건, 143백만원

□ 독촉장 일제 송달을 통한 체납액 징수실적

- ◇ 추진내용 : 내무부 및 서울시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하여 체납자에 대한 변동주소를 추적 독촉장 일제 송달
- ◇ 추진기간 : 97. 6. 1 ~ 6. 30
- ◇ 독촉장 발송 : 222,710건, 관련체납액 27,253백만원
- ◇ 6월중 징수실적 : 861백만원
(※ 96. 6월중 징수실적 보다 229백만원 증액징수, 97.1월부터 7월말까지 과년도 체납징수 총액의 32.0%차지)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실적

- ◇ 추진기간 : 97. 1월 ~ 8.25
- ◇ 제한 내용
 - 인.허가 신청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조회하여 체납액 완납시까지 인.허가처리 보류
- ◇ 체납액 징수실적 : 818건 46백만원

□ 상습 체납자 봉급압류 실시 예고장 송달

수차례에 걸친 납부촉촉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방세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직장조사를 통한 급여압류 실시로 체납액 징수

◇ 직장조회 결과

- 사기업체 근무 체납자
 - . 대 상 : 2,219명, 체납액 10,384건 1,196백만원
 - . 조회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사립학교 근무 체납자
 - . 대 상 : 284명 체납액(개인별 체납내역 조회중)
- 공 무 원
 - . 대 상 : 824명 체납액(개인별 체납내역 조회중)
 - (조회기관 :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호 관리공단)

◇ 진행 및 향후조치

- 사기업체 근무 체납자
 - . 개인별 체납내역 발체 및 체납고지서 인쇄 완료: 97.7.20 ~ 8.10
 - . 8월말까지 체납액을 사전 납부하도록 체납 고지서 및 봉급 압류 예고장을 직장으로 송달완료 하였으며 8월말까지 미납자에 대하여 9월부터 급여압류 실시
- 사립학교 직원 및 공무원
 - . 9. 10까지 개인별 체납내역을 발체하여 체납고지서 및 봉급압류 예고장을 직장으로 송달하고, 9월말까지 미납자에 대하여 10월부터 급여압류 실시

□ 체납자 금융거래 제한 조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함으로써 금융거래시 대출중단, 대출기간연장 제한, 신규여신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하여 체납액 징수

- ◇ 예고장 송달 : 대상자에게 2차에 걸쳐 8월말까지 사전납부토록 체납 고지서 및 신용정보 제공 예고장 송달완료(97.8.6완료)
- ◇ 신용정보 제공 대상자(법적 기준)
 - 1,000만원이상 체납자 중 체납액이 1년이상 경과된 자
 - 1년에 3회이상 체납자 중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 체납액이 500백만원이상 결손처분 된자
- ◇ 우리구 대상자 : 190명, 관련 체납액 11,822백만원
- ◇ 시행시기 : 97년 9월부터 서울시 합동계획에 따라 실시
- ◇ 관련근거 : 국세징수법 제 7조의2 (96. 12. 30 신설)

□ 자동차세 등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강제 영치 예고장 및 차량압류 예고 독촉장 일제 송달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을 장기 체납하고있는 상습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 및 차량번호판 강제 영치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

◎ 차량번호판 영치

- ◇ 대 상 : 과년도 자동차 관련세 체납액 25,218건, 11,205백만원
-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차량번호판 영치)
- ◇ 진행 및 계획
 - 전체 대상자에게 영치 예고장 송달완료(8. 30까지 자진납부 독려)
 - 97. 8월말까지 미납자에 대하여 9월이후 서울시 합동 계획에 따라 번호판 영치작업 실시 예정

◎ 차량 압류

- ◇ 대 상 : 97. 1기분 자동차세 체납자(11,396건, 11,822백만원)
 - ◇ 진행 및 계획
 - 7월말까지 체납자에 대하여 8월말까지 납부토록 독촉장 송달완료
 - 8월말까지 미납자에 대하여 9월중 차량 압류조치
- (※ 97. 1기분 이전 체납자는 압류조치 완료)

하반기 정기분 부과징수 계획

□ '97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징수(10월)

◎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97목표	'96징수실적	증△감액	증△감율
12,181	12,240	△59	△0.4%

◎ 납세 의무자 : 97. 6. 1 현재 토지소유자

◎ 납부기간 : '97. 10. 16 ~ 10. 31

◎ 업무 추진내용 및 일정

- 과세자료 정리 : 97. 6월 ~ 7. 25(정리완료)

- 고지서 배부 및 세무공무원 교육 : '97. 10. 12

- 고지서 송달 : '97. 10. 13 ~ 10. 15

(전출지 추적을 통하여 고지서 송달을 최대한 제고)

- 납부홍보 : 입간판, 현수막, 반상회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

□ '97.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12월)

◎ 징수 목표

(단위 : 백만원)

'97목표	'96징수실적	증△감액	증△감율
18,886	16,415	2,471	15.1%

◎ 납세 의무자 : 97.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97. 12. 16 ~ 12. 31

◎ 업무 추진일정

- 변동 과세자료 정리 : 97. 10월 ~ 11.30

- 고지서 배부 및 세무공무원 교육 : '97. 12. 12

- 고지서 송달 : '97. 12. 13 ~ 12. 15

(고지서 출력 전에 자동차전산망을 활용 변동주소 추적하여 송달)

- 납부홍보 : 입간판, 현수막, 반상회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

○ 세목별 '97지방세 징수실적

(97. 7. 31현재 누계)

(단위: 백만원)

세 목 별	'97년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징 수 율 (%)		96년 동기비교 징수 증△감액	
				A:C	B:C		
총 계	156,194	90,847	83,341	53.4	91.7	10,003	
구 면 세	소 계	25,642	11,193	10,652	41.5	95.2	49
	면허세	3,741	2,554	2,294	61.3	89.8	△425
	재산세	5,858	5,686	5,451	93.1	95.9	167
	종합토지세	12,181	11	6	0.1	55.8	△60
	사업소세	3,341	2,520	2,479	74.2	98.4	286
	체납구세	521	422	422	81.0	100.0	81
시 세	소 계	130,552	79,654	72,689	55.7	91.3	9,954
	차량취득세	4,873	3,004	2,623	53.8	87.3	8
	차량등록세	9,436	4,428	4,335	45.9	97.9	△35
	자동차세	18,886	10,215	8,293	43.9	81.2	804
	부동산취득	19,436	11,676	11,069	57.0	94.8	1,644
	부동산등록	26,510	16,789	16,788	63.3	99.9	3,023
	주민세	36,151	25,559	21,800	60.3	85.3	3,507
	도시계획세	8,836	2,997	2,903	32.9	96.9	131
	공동시설세	2,720	2,713	2,605	95.8	96.0	142
	지역개발세	5	2	2	47.0	100.0	△1
	체납시세	3,699	2,271	2,271	61.4	100.0	731

○ 과목별 '97세외수입 징수실적

(97. 7. 31현재 누계)

(단위: 백만원)

과목별	'97징수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징수율(%)		'96년 동기비교 징수 증△감액		
				A:C	B:C			
합 계	47,124	46,551	45,787	97.2	98.4	19,441		
검상적 세외수입	소 계	13,145	7,774	7,520	57.2	96.7	1,600	
	재산입대수	25	29	29	116.0	100.0	16	
	사용료	도로하천	1,976	1,757	1,521	77.0	86.6	△208
		공원	5	△2	△2	△40.0	100.0	△8
		주차장	50	35	35	70.0	100.0	35
	수수료	보건소	327	213	213	65.1	100.0	22
		증지	900	554	554	61.6	100.0	3
		쓰레기	3,956	1,964	1,946	49.2	99.1	279
		기타	1,315	0	0	-	-	--
	징교부금	3,891	2,311	2,311	59.4	100.0	832	
	이자수입	700	913	913	130.4	100.0	629	
	임시적 세외수입	소 계	33,979	38,776	38,267	112.6	98.7	17,811
		재산매각수	1,955	2,911	2,911	148.9	100.0	964
		전년도월급	29,577	33,535	33,535	113.4	100.0	16,680
징수입		파태료	890	1,215	706	79.3	58.1	33
		기타	642	513	513	79.9	100.0	△277
부담금		255	452	452	177.3	100.0	350	
과년도수		660	150	150	22.7	100.0	61	

지 적 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법률 제4875호)

○ 추진실적

'97 년도 접수예상	처 리 현 황			비 고
	접 수	처 리	진 행 중	
15건	10건/24필지	2건/5필지	8건/19필지	

○ 향후 추진사항

- 내고장마포, 전광판, 지역신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대상토지소유자 개별 통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 대 상 : 6대도시내 택지 660m²이상 소유가구 및 택지보유법인

○ 추진실적

('97. 6. 1기준)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계	개 인	법 인		
부과통지 ('97.8.30)	117	81	36	약42억원	

○ 누락세원발굴계획

- 기 간 : '97. 7. 21 ~ 12. 31
- 대 상 : 불법취득자 및 미신고자 조사
- 방 법 : 건설교통부에서 배부한 택지전산검색자료를 이용, 미신고자와 불법취득자를 조사적발하여 부담금 부과
- 소유자별 조사대상

구 분	계	법 인	세 대	미성년자	부 녀 자	비 고
건 수	3,886	213	746	9	2,918	

- 부과예정 통지 : '98. 1. 31

□ 개발부담금 부과

- 부과근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대상면적 660㎡이상)
- 개발완료사업 : 3건
- 개발부담금 산정결과
 - < 개발이익이 없는 부과제외대상 >
 - 서서울아파트 재건축사업
 - 성산동275-55, 56 토지형질변경
 - < 개발부담금 산정대상 >
 - 토정동 삼성아파트 재건축사업
 - 부과예정통지 ('97. 6. 26) : 809,602,902원
 - 고지전 심사청구 ('97. 7. 15) : 연약지반 파일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 주장
 - 인정회신 : 건교부 민원회신 58307-486 ('97. 7. 18)
 - 건교부 질의요청 ('97. 7. 25) : 개발부담금 사례별 질의회신내용 책자와 상충으로 질의 요청중

□ 개별공시지가 조사

- 개 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전체개별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 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업무로 방대한 업무량과 과도한 조사원의 소요로 구정운영3개년계획과 관련하여 연중조사를 실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 사업기간 : '97. 1. 1 ~ '97. 8. 31
- 추진실적
 - 조사필지 : 55,500필지
 - 결정공고전 의견접수 : 총187필지(상향요구131필지, 하향요구56필지)
 - ▶ 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상향48필지,하향26필지,기각113필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 '97. 6. 30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97. 7. 1 ~ 7. 30
 - ▶ 이의신청 : 205필지(상향요구95, 하향요구110)
 -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97. 8. 26
 - ▶ 205필지(상향 23, 하향 45, 기각 135, 각하2)

□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 기 간 : '97. 7. 1 ~ 12. 31
- 정비반편성 : 건축물관리계장의 3명
- 방 법

건축물대장 전량을 건물등기부와 대조 확인정리

- 건물등기부 열람조서 작성 및 대장정리
- 건축물대장 정리결과 통지

○ 정비실적

(단위 : 건)

총 필 지	등기부열람(A)	대장일치(B)	불일치정리(C)	비율(C/A)
63,828	4,102	3,074	1,028	25%